

제2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19. 8. 2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8월 28일

수석전문위원 정우숙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19 - 53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8월 14일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8월 21일

## 2. 제안이유

2020년 4월 개관 예정인 공항데이케어센터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  - 사업명: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(가칭) 관리 위탁 운영
  - 위탁기간: 5년
  - 위탁근거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

#### 나. 추진일정

- 2019. 9~10월: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
- 2019. 11월: 위탁협약 체결
- 2020. 4월: 공항데이케어센터 개관 예정

### 4. 참고사항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 
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### 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복지시설인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어르신 돌봄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대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,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적정한 위탁체 선정,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지도·감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## 붙임1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#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**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 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 2. 위탁계약기간
 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